

#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숨터 조성 및 돌봄사업 위탁 재계약 동의안

의안 번호	882
----------	-----

제 출 일 : 2026. 1. 27.

제 출 자 : 남양주시장

## 1. 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

### ○ 추진근거

- 「실내공기질 관리법」 제12조의2(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)
- 「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」 제6조(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)
- 「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(의회동의 및 보고)

### ○ 필요성

-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숨터 조성 및 돌봄사업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하여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공기관에 위탁(재계약)하여 추진하고자 함.

## 2. 위탁사무 내용

### ○ 실내공기질 측정 및 관리요령 안내

### ○ 실내공간 환경 개선지원

- 사업 관련 업체, 환경개선 제품 선정 및 계약체결 관련 제반 사항 운영 관리
- 현장 관리·감독 관련 제반 사항 운영

### ○ 상기 각 목의 수행에 따른 부대 업무

## 3. 위탁시설 개요

### ○ 실내공기질 컨설팅 : 취약계층 이용시설 428개소

- 실내공기질 측정하여 시설별 진단 및 유해인자 상관관계(외기상태와 미세먼지 농도 등) 분석

※ 측정항목(6) : PM10, PM2.5, CO2, CO, 총부유세균, 곰팡이

- 실내공간 환경 개선지원 : 8개소
  - 컨설팅을 받은 시설 중 자발적 개선이 어려운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유해인자 제거를 위한 실내 환경 정비
    - ※ 타부서 사업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설
    - ※ 벽면 등 곰팡이 제거, 누수 벽면 방수 처리 페인트 시공 등 실내공기질 개선에 필요한 시공 지원

4. 위탁 기간 : 11개월 (2026. 2. ~ 2025. 12.)

5. 수탁기관 선정방식 : 심의위원회 개최 후 선정

6.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

- 소요예산 : 72,660천원(도비 30%, 시비 70%)
  - ※ 사업비에 위탁수수료 포함
- 사업량

( 단위 : 개소, 천원 )

구분	사업량	산출내역	비고
합계	436	72,660	도비 30%, 시비 70%
실내공기질 컨설팅	428	40,660	428개소 × 95,000원
실내공간 환경 개선지원	8	32,000	8개소 × 4,000,000원

7.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

구분	검토의견
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본 사업은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공서비스이며, 법정규모 미만 시설을 대상으로 한 지원 사업으로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음</li> <li>○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환경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고 사업수행 경험이 많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됨</li> <li>○ 위탁사무는 취약계층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의 전반적인 사무이며, 기존 수탁기간과 재계약하고자 함</li> </ul>

구 분	검 토 의 견
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본 사업은 남양주시 전역의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,</li> <li>○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매년 추진하는 사업임</li> </ul>
경제적 효율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동일 사무에 대하여 경기도내 23개 시·군이 (재)경기도 에너지환경진흥원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, 전문기관에서 일괄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예산 절감 및 효율적인 사업 운영 가능</li> </ul>
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다년간 축적된 경험 및 전문성을 통해 실내공기질 측정 및 관리요령 안내가 가능하며,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내공간 환경개선지원 가능</li> </ul>
성과 측정의 용이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실내공기질 측정 개소수, 실내환경 조성 시설수, 만족도 조사 등 정량적 성과측정 가능 (시군종합평가 기준 공급 목표 설정)</li> </ul>
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(지도·감독)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·감독 및 점검을 통하여 사업 운영의 투명성 제고</li> </ul>
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해당없음</li> </ul>
총 합 의 견	<p>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 숨터 조성 및 돌봄사업은 남양주시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능률성이 현저히 요구되며,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통해 원활한 사업 운영 및 관리가 가능하며 효율적 추진이 가능한 기관에 재위탁 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</p>

## 8. 기타 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

- 2026. 2. ~ 12. : 위·수탁 협약체결 및 사업추진
- 성과평가
  - 근거 : 「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21조(성과평가)
  - 대상 : 2025년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숨터 조성 및 돌봄사업 ((재)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) 평가 완료(25. 12. 31.)

- 평가 결과

분야	점검항목 (점수)	점검 내용	배 점	점 수
투입	인력 (10)	· 인력의 적정성(자격증 경력 확인) · 적정 인력 투입(사업 및 이용자 대비 인원수)	10	8
	자원 (10)	· 사업성과별 예산 집행의 적정성	10	8
과정	준수성 (10)	· 사업계획 이행 여부(시기, 방법 등) · 서비스 및 업무 과정기록의 충실성	10	8
	노력성 (10)	· 외부자원(인적, 물적자원)동원 노력	10	8
산출	사업성과 달성 (50)	· 사업별 성과 달성률 확인	50	45
활용	피드백 (10)	· 이용자 만족도 조사 유무	10	10
<b>총점</b>			<b>100</b>	<b>87</b>

※ 우수(90점 이상), 보통(70점 이상), 미흡(70점 미만), 총점 70점이상인 경우 재계약 결정 가능

○ 지도점검 결과

- 근거 : 「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17조(지도·감독)
- 2025. 4. 2. : 25년 맑은숨터 조성 및 돌봄사업 1분기 수행사항 보고 제출
- 2025. 7. 1. : 25년 맑은숨터 조성 및 돌봄사업 2분기 수행사항 보고 제출
- 2025. 9. 30. : 25년 맑은숨터 조성 및 돌봄사업 3분기 수행사항 보고 제출